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험물시설 점검업 신설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900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신고 기한 합리화	3
2. 위험물시설 점검업 신설 및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 점검 제도 도입	9
3.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결격사유 정비 등	33
4. 위험물 안전교육 중 강습교육의 법적 근거 명확화	48
5. 양벌규정 벌금액 상한액 상향	52
6. 조례상 부과 가능한 과태료의 상한액 상향	55
7. 부 칙	59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4. 11. 26.
3. 회 부 일 : 2024.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기한의 조정(안 제11조의2)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함.

나.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결격사유 정비(안 제16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의 결격사유를 법인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대표자 외에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

다.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안 제16조의2 신설)

- 1)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기술적 점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2) 시·도지사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실시(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확산 방지, 전문적·기술적 점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신고 기한 합리화

개정안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생략)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u>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u>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u>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u> -----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u>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u>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③ ----- ----- <u>제1항에 따라</u> ¹⁾ ----- ----- -----

현행	개정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생략)	----- -----. ④ (현행과 같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석유류 등 위험물에 대한 관리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함)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²⁾.

- 1) 제11조의2제1항 중 ① 본문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고, ② 단서는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조소등의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중지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임.
- 따라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안전조치 내용에는 제11조의2제1항 본문과 단서가 모두 포함되므로, 법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1조의2제3항을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전국 제조소등 현황〉

(2023. 12. 31. 기준³⁾)

구분	계 (개소)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소계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소계	옥내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	이동 탱크	옥외	암반 탱크
계	109,048	2,589	24,583	14,612	916	360	8,695	81,876	8,568	29,249	9,714	6,051	34	23,168	5,063	29

(자료: 소방청)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6조제1항),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또는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한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제11조의2제2항).

개정안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

-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 3) '24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는 '25년 6월 공표 예정.

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그 신고기한을 종전의 ‘14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단축하고,

사용을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그 신고기한을 종전의 ‘14일 전까지’에서 ‘3일 전까지’로 단축하려는 것임.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재개 시 신고 기한>

	현행	개정안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제조소등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의 <u>14일 전까지</u> 신고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의 <u>7일 전까지</u> 신고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의 <u>14일 전까지</u> 신고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의 <u>3일 전까지</u> 신고

현행법은 관계인⁴⁾이 경영상 사유 등으로 신속하게 사용중지를 하려는 경우에도 사용중지신고 후 14일이 경과해야만 사용중지를 할 수 있는 등 관계인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사용중지 신고기한을 7일로 단축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수범자의 영업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4) 관계인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의미함(제11조).

문제가 없다고 보임.

참고로, 소방청은 사용중지 신고를 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 관계인이 사용중지 신고를 한 때에는 소방서장⁵⁾은 관계인이 실시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제11조의2제3항⁶⁾)⁷⁾ 이를 위해서는 7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은 사용재개 신고기한을 종전의 ‘14일 전까지’에서 ‘3일 전까지’로 단축하고 있는데, 사용재개 신고 시 감독행정청이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i) 재개 사실의 존재와 ii) 신고 내용의 적부라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점검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사용재개 신고기한을 3일로 단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 12. 3., 2021. 6. 8., 2021. 10. 19., 2024. 7. 23.>

1. ~ 7. (생략)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접수 → 현장방문, 안전조치 이행여부 (잔류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거, 관계인의 출입금지 조치,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그 밖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확인 → 신고 수리(승인)”가 필요함.

참고로, 소방청은 사용중지에 대한 재개 신고 수리에는 1일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함⁸⁾.

8) 참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의 처리 기간 산정 시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제1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위험물시설 점검업 신설 및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개정안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안 제16조의2제1항 전단),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현행 정기점검 대상 중 일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16조의2제1항), 등록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안 제16조의2제2항), 등록·종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안 제16조의2제4항), 등록 취소·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내용을 규정하며(안 제16조의2제5항),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게 성실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16조의2제7항),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대한 행정 감독 및 수수료 부과에 근거를 신설하며(안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3조, 제31조), 위험물 점검업자가 이 법을 어기는 경우의 벌칙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6조의2(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u> <u>③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u> <u>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u> <u>1. 피성년후견인</u> <u>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현행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항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6. 법인의 임원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⑤ 시·도지사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현행	개정안
	<u>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u> 1. <u>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u> 2. <u>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u> 3. <u>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u> 4. <u>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u> 5. <u>위험물시설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⑥ <u>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해서는 안 된다.</u> ⑦ <u>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위험</u>

현행	개정안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물시설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 ----- ----- ----- ----- ----- ----. 이 경우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 가운데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확산 방지, 전문적·기술적 점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u>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③ ----- ---- <u>제조소등 가운데</u> ----- ----- ----- ----- ----- -----

현행	개정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u>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u> ⑥ (생략)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u>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u> 제29조(청문)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 1. (생략) 2. <u>제16조제5항의 규정</u>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신설>	-----. 제22조(출입·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게 그 등록 또는 업무에</u> ----- ----- <u>해당</u> ----- -----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탱크시험자 등에 대한 명령) - ----- - <u>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를 감독하며</u> -----. 제29조(청문) ----- ----- ----- <u>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u> ----- -----. 1. (현행과 같음) 2. <u>제16조제6항</u>----- ----- 3. <u>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시</u>

현행	개정안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허가·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u>설 점검업자의 등록취소</u> 제31조(수수료 등)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u>7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u>
<u><신설></u>	<u>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u>
	<u>7의3.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험</u>
	<u>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u>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u>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 ----- -----.

현행	개정안
1. 2. 삭제 3. (생략) <u><신설></u> 4. ~ 9. (생략)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10. ~ 12. (생략) 13. <u>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u> <u>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u> <u>아니한 자</u> 14. 15. (생략)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업무를 한 자</u> 4. ~ 9.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 ----- -----. 1. ~ 9. (생략) <u>9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u> <u>9의3. 제1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시설 점검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u> 10. ~ 12. (현행과 같음) 13. <u>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또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u>----- ----- 14. 15.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모든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에게 그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상시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제14조제1항), 제조소등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정기점검제도와 정기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정기점검제도란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이 현행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고(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정기검사제도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 가운데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L(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해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이 현행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임(제18조제3항 및 영 제17조).

<정기점검 제도와 정기검사 제도 비교9)>

	정기점검	정기검사
근거규정	제18조제1항	제18조제3항
점검·검사 주체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소방서장
점검·검사 실시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안전관리 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에 의뢰 가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점검·검사 대상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일반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액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점검·검사 항목	대상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점검·검사 주기	연1회 이상	[정밀정기검사] ▶ 최초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중간정기검사] ▶ 최초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자료: 소방청)

9) 위험물안전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제도의 상세 비교는 [참고 2] 참조

<제조소등, 정기점검대상, 정기검사 대상 현황>

(2023. 12. 31. 기준)

구분	계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옥내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	이동 탱크	옥외	암반 탱크
제조소등 현황	109,048	2,589	14,612	916	360	8,695	8,568	29,249	9,714	6,051	34	23,168	5,063	29
정기점검 대상 현황	57,400	1,764	14,612	—	360	2,633	951	7,394	—	6,051	—	23,168	438	29
점검업자 정기점검 대상 (안 ¹⁰⁾)	3,689	197	18	—	230	164	66	2,848	—	33	—	—	—	29
정기검사 대상 현황	5,004	—	—	—	—	—	—	5,004	—	—	—	—	—	—

(자료: 소방청)

그런데,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사고¹¹⁾ 이후 추진된 소방청의 제조소등의 전수 검사¹²⁾ 결과에 따르면, 총

10)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므로,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대상은 현재 확정할 수 없음. 다만, 본 통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대상(지정수량 3,000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자료: 소방청).

11)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개요

-사고일시: 2018. 10. 7.

-재산피해: 휘발유 탱크 2기 소실 등 약 77억원

(자료: 소방청)

12) 제조소등 전수검사 개요

- 검사 기간: 2019. 1. 1. ~ 2021. 12. 31.

- 검사 대상: 412개 사업장 10,258개소

- 검사 결과: 4,020개소 5,309건 적발

※ 정기점검 부실 사례 4,749건(전체 적발 건수의 89.5%)

(자료: 소방청)

10,258개소 중에서 4,020개소 5,309건이 적발되었고 이 중 정기점검 부실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89.5%인 4,749건으로 나타났음. 한편, 동 검사에서 정기점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가장 큰 이유로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형식적 점검 및 전문역량 부족이 제시되었음.

이에 이러한 점검 부실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점검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나(제18조제2항)¹³⁾ 이후로도 정기점검 부실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정기점검 제도를 보완하고자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도입하고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현행 정기점검 대상 중 위험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란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업으로 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하고(안 제16조의2제1항),

13)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045호)을 2020.6.26.에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2020.9.22.)와 본회의의 의결(2020.9.24.)을 거쳐 법률 제17518호로 공포되었음(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1.10.21.).

위험물시설 점검업 제도란 현행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 가운데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히 더 엄격하게 전문적·기술적 점검이 필요한 제조소등에 대해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함(안 제18조제1항 후단).

<위험물시설 점검업자 관련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 내용(안 제16조의2제1항)
정의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업으로 하는 자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필요

<정기점검 제도 관련 현행과 개정안 비교>

[현행(제18조제1항)]		[개정안(안 제18조제1항 후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① 연 1회 이상의 자체적인 정기점검 실시	⇒	① 위험성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에 대해 ② 연 1회 이상의 자체적인 정기점검 실시
		전문 점검업자가
		① 위험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②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대행 - 전문 기술능력, 장비 및 시설을 통해 점검

현행 정기점검 제도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형식적인 점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정기점검 대상 중 일정 범위의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해당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제조소등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고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체 안전관리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소방청은 제조소등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 감독을 통한 점검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위험물시설 점검업 신설 필요성>

○ (사유 1) 제조소등의 다양성 및 복합성

- (다양성) 제조소등은 그 목적에 따라 위험물의 △제조를 위한 제조소 △저장을 위한 저장소 △취급을 위한 취급소로 구분되며, 태양에 따라 저장소의 경우 8가지*로, 취급소의 경우 4가지**로 세부 구분됨

*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 (복합성) 제조소등의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서 기계(용접)·금속·전기(전기설비)·화학(화공)·건설(구조, 토질·지질, 측량·지적)·산업(산업안전, 소방·방재) 등 방대한 기술분야가 요구됨

○ (사유 2) 체계적인 관리·행정 감독을 통한 점검 신뢰성 담보

- 점검업을 도입하지 않고 민간에 순수 이양하는 경우 제조소등의 관계인(고용주)와 점검자(고용인)의 갑을관계에 의한 필연적 점검 부실화가 예견됨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 부분 관여하되 민간의 전문 기술력을 활용 가능토록 업역을 신설하여 점검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함
- (효율성) 등록 의무·감독·제재 기준을 규정하여 무등록 점검업자, 허위 점검업무 수행 등에 형벌을 부과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점검업자의 관리와 행정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
- (보장성) 제조소등의 다양성 및 복합성에 따른 점검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기술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함

(자료: 소방청)

한편, 개정안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16조의2제1항), 등록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안 제16조의2제2항), 등록·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16조의2제4항). 또한, 개정안은 등록 취소·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의 내용을 규정하고(안 제16조의2제5항),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게 성실의 의무를 부여하며(안 제16조의2제7항),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대한 행정 감독 및 수수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22조제5항, 제23조, 제31조), 위험물 점검업자가 이 법을 어기는 경우의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내용 및 벌칙/과태료의 요건과 수준은 현행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에서 규정되어 있음.

<위험물시설 점검업 제도 관련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조문)	벌칙/과태료(조문)
위험물 시설 점검업자	등록 관련	-등록 의무 부과(안 제16조의2제1항)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안 제35조제3호의2)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 시 신고의 무(안 제16조의2제2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 제39조제1항제6호)
		-결격사유(안 제16조의2제4항)	
	업 무 수 행 관련	-등록증 대여 금지(안 제16조의2제3항)	
		-허위점검 금지, 허위서류발급 금지(안 제16조의2제6항)	1,500만원 이하 벌금 (안 제36조제9호의3)
		-성실의 의무(안 제16조의2제7항)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제32조제 2호의2)	
위험물 시설 점검업자 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 취소· 영업정지 관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 (안 제16조의2제5항) -등록취소 시 청문 실시 (안 제29조제3호)	1,500만원 이하 벌금 (안 제36조제9호의2)
	행 정 조 사 및 감 독	-관계인의 보고, 자료제출 명령,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질문 (안 제22조제5항)	1,500만원 이하 벌금 (안 제36조제12호)
		-소방서장 등의 위험물시설 점검업자 업무 감독 및 명령 권한(안 제23조)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6조제13호)
	수수료	위험물시설 점검업자 등록,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시 수수료 납부 (안 제31조제7호의2 및 제7호의3)	

위험물시설 점검업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동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자격, 감독, 법규 위반시의 제재 처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범자의 이해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한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와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비교할 때, 탱크시험자는 위험물탱크 제작 단계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신뢰성이 담보된 시험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신뢰성이 담보된 점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임.

이처럼 위험물안전관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탱크시험자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업역의 목적과 중요성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이므로, 현행 탱크시험업자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 위반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정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위험물시설 점검업 관련 조문의 체계 및 행정상의 감독, 위반시 부과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 위험물시설 점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 추가 필요

첫째,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 결격사유 중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결격사유로 ① 피성년후견인, ②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법인으로서는 그 대표자가 ① ~ ④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인의 임원이 ② ~ 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개정안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
후견인¹⁴⁾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
과 달리,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는 그 법인의 결격사유
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잔존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인정하고 피성년
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나¹⁵⁾,

위험물시설 점검업은 국민의 안전 보호와 재산 보장에 중대한 영향

14) 성년후견 제도란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정신장애인·노인 등의 행위능력을 획일
적·포괄적으로 배제하던 것과 달리, 이들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을 개별적·한정적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정신장애인·노인 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된 제도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의 비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 소 가능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 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 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 견인 동의 필요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 의 필요

15) 특정 직역의 결격사유로 피후견인을 규정하는 것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성년후견 제도 이용이 필요한 자가 의도적으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성
년후견 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저
해할 우려가 있음*.

**예컨대 서울가정법원의 사례에 따르면, 낭비벽이 있는 안경사가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신청을 했다가 피한정후견인이 안경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알
게 되어 신청을 취하한 사례가 존재함.

(출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102792호) 검토보고, 2020. 11., 2-4면)

을 미치고 고도의 전문성·윤리성·공정성을 요구하는 직업에 해당된다는 점, 임원은 법인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2항제6호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호17)등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소방 관련 법률에서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5.1.20., 2018.10.16., 2021.1.12., 2021.11.30.>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15.1.20.>
3.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행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이를 해당 법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시 벌칙 신설 필요

둘째, 위험물시설 점검업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게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16조의2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안 제16조의2제5항),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것에 대한 벌칙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등록제도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 둔 장부에 등재함으로써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¹⁸⁾

등록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는 것 외에 수범자에게 해당 제도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등록증의 대여를 강력하게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록제도를 두고 있는 다수의 입법례가 등록증

18)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333면.

대여 금지제도를 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와 더불어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¹⁹⁾ 등을 고려할 때, 위험물시설 점검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에게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²⁰⁾.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① 관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맞게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 (생략)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6조(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0)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 소방청은 대여받은 자와 대여한 자에 대한 벌칙은 위험물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타법률 대비 규범력이 강한 편이므로(1,500만원 / 타 법률 1,000만원)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임.

한편, 등록증을 빌린 자가 허위 등록증을 이용해서 위험물시설 점검업무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인 “위험물시설 점검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라 보여지므로

등록증을 빌린 자가 허위 등록증을 이용해서 위험물시설 점검업무를 하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3.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결격사유 정비 등

개정안은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등록된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그 밖에 탱크시험자가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 탱크안전성능시험자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제7호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생략)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이 경우 등록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④ 탱크시험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1. ~ 4. (생략)	⑤ ----- ----- ----- 등록할 수 없다.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	1. ~ 4. (현행과 같음)
	5. 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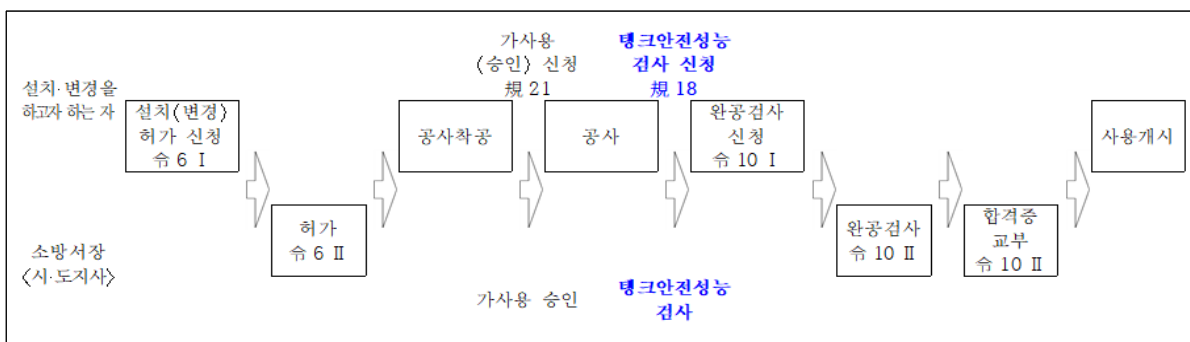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는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⑤ 시·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5. (생략)	----- ----- ----- -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⑥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⑥ (생략) 제29조(청문)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 1. (생략) 2. <u>제16조제5항의 규정</u>에 따른 탱크 시험자의 등록취소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8. <u>제16조제5항의 규정</u>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u>제16조제6항의 규정</u>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u><신설></u> <u><신설></u> 10. ~ 12. (생략) 13. (생략) 14. · 15.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9조(청문) ----- ----- ----- <u>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u> ----- ----. 1. (현행과 같음) 2. <u>제16조제6항</u>----- ----- 제36조(벌칙)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16조제6항</u>----- ----- 9. <u>제16조제7항</u>----- ----- ----- ----- ----- (생략)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생략) 14. · 15.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조소등에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함)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안전관리자”라 함)로 두고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하여금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제15조제1항).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소등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탱크(이하 “탱크”라 함)를 설치하거나 탱크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제8조제1항)²¹⁾.

<위험물시설 설치 절차 개관>



(자료: 소방청)

21)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 및 내용은 [참고 1] 참조

한편, 현행법은 제조소등에 위험물탱크의 설치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함)로 하여금 탱크안전성능검사 등 이 법에 의한 검사나 점검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록결격사유, 등록 취소·업무정지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제16조).

개정안은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등록한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탱크시험자가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 탱크안전성능시험자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위험물시설 점검업자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현행(제16조)	개정안(제16조)
탱크 시험자 등록	탱크시험자 등록의무 규정(제1항)	
	-	등록절차 등 부령위임 (제2항 후단 신설)
	-	등록증 대여금지(제4항 신설)
등록 결격 사유 (제5항)	1. 피성년후견인	
	3. 소방관계법 ²²⁾ 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소방관계법 ²³⁾ 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구분	현행(제16조)	개정안(제16조)
	5.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유 (제6항)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2) 이 법(「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정됨.

23) 이 법(「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정됨.

탱크시험자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역의 하나로 업역의 형태가 유사함. 탱크시험자는 위험물탱크 제작 단계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신뢰성이 담보된 시험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점검을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신뢰성이 담보된 점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임. 이처럼 위험물안전관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탱크시험자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는 업역의 목적과 중요성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이므로, 위험물시설 점검업과 관련한 조문의 구조를 참고해서 탱크시험업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따른 위험물시설 점검업 및 탱크시험업 관련 규정 비교>

내용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 등 (제16조의2)	탱크시험 업자의 등록 등(제16조)	벌칙/과태료
-업의 내용	제1항	제1항	
-업의 등록 의무 -절차는 부령 위임	제1항	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5조제3호, 제3호의2)
*위반시 등록취소/업무 정지 **등록 수수료	*제5항제1호/제4호 **제31조제7호의2	*제6항제1호/제4호 ** 제31조 제6호	
-변경신고	제2항	제3항	500만원 이하
*변경 수수료	*제31조제7호의3	*제31조 제7호	과태료(제39조제6호)
-등록증 대여 금지	제3항	<u>제4항(신설)</u>	
*위반시 등록취소	제5항 제2호	제6항 제2호 (현행 제6항제3호)	
-결격사유	제4항	제5항	
*위반시 등록취소	제5항 제3호	제5항 제3호	
-등록취소	제5항	제6항	
*취소 전 청문 실시	*제29조 제3호	*제29조 제2호	
-업무정지	제5항	제6항	1,500만원 이하 벌금(제36조제8호, 제9호의2)
-허위점검 금지 -허위서류 교부 금지	제6항	-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6조제9호, 제9호의3)
*위반시 업무정지/등 록취소	제5항 제5호	제6항 제5호	
-업자의 성실 의무	제7항	제7항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호의2	제32조 제2호	
-업자에 대한 감독	제23조	제23조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6조제13호)

(1) 등록증 대여금지 조항 신설 관련: 벌칙 신설 필요

첫째, 탱크시험자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법은 탱크시험자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이를 탱크시험자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제16조제5항제3호)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고자 탱크시험자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안 제16조제4항),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것에 대한 벌칙은 현행법과 개정안에 규정하지 않고 있음.

등록증 대여 시 제재규정을 두는 경우, 조문 구성 순서 상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먼저 두고 이후에 이를 위반하면 제재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²⁴⁾,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경우에도 개정안은 등록증 대여 금지 조문과 위반시의 제재 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안 제16조의2제6항, 제36조제9호의3) 등을 고려할 때,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안 제16조제4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다만, 탱크시험자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24)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336면.

등록제도에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 둔 장부에 등재함으로써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²⁵⁾

등록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는 것 외에 수범자에게 해당 제도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등록증의 대여를 강력하게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록제도를 두고 있는 다수의 입법례가 등록증 대여 금지제도를 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와 더불어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²⁶⁾ 등

25)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333면.

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① 관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맞게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 (생략)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을 고려할 때, 탱크시험자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에게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등록증을 빌린 자가 허위 등록증을 이용해서 탱크안전성능 시험 또는 점검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인 “탱크안전성능 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라 보여 지므로,

등록증을 빌린 자가 허위 등록증을 이용해서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하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6조(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 추가 필요

둘째, 탱크시험자의 등록 결격사유 중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법은 탱크시험자의 등록 결격사유로 ① 피성년후견인, ②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① ~ ④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개정안은 탱크시험자의 결격사유에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와 더불어 법인의 임원이 위의 ② ~ ④에 해당하는 경우 탱크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거나(안 제16조제5항제7호)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제16조제6항).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다수의 입법례²⁷⁾가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법인의 결격사유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27)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예시)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직접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처분이나 폐업명령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업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9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경우는 법인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잔존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인정하고 피성년
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탱크시험자는 국민의 안전 보호와 재산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고 고도의 전문성·윤리성·공정성을 요구하는 직업에 해당된다는 점,
임원은 법인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2항제6호²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호²⁹⁾)등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소

2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5.1.20., 2018.10.16., 2021.1.12., 2021.11.30.>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15.1.20.>
3.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하
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행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
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방 관련 법률에서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이를 해당 법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4. 위험물 안전교육 중 강습교육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은 안전관리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2. 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3.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재 위험물 안전교육은 ① 안전관리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과 ② 안전관리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로 해당 업무에 종사

하고 있는 사람이 받고 있는 ‘실무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나³⁰⁾, 현행법의 범문에는 강습교육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 제28조제1항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률 조문 간의 체계 정합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행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중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① 안전교육은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0조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과 영 제2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24. 5. 20.>

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2017. 7. 26., 2019. 1. 3.>

④ 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7.>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1. 안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나. 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다.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5조제1항)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15조제9항)³¹⁾.

한편,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별표 5]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②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③ 소방공무원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음³²⁾.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 제15조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취득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28조제1항제1호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3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 ~ ⑧ (생략)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받도록 규정하여 제15조와 달리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요건 중 일부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문 간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하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개정안의 법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양벌규정 벌금액 상한액 상향

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양벌규정의 벌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양벌규정) ① ----- ----- ----- ----- ----- 1억원 ----- ----- ----- 3억원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8조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제33조에 따른 양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과실범을 처벌하는 제34조에 따른 양벌규정인 제38조제2항의 벌금액보다 그 상한이 낮거나³³⁾ 같게³⁴⁾ 규정하고 있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양벌규정 벌금형의 상한을 해당 조문 자유형의 상한에 대응하는 행정벌의 금액을 고려하여³⁵⁾ ① 고의로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양벌규정상 벌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② 고의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의 양벌규정상 벌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33) -고의로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양벌규정상 벌금 상한액: 5,000만원(현행법 제38조제1항)
-과실로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양벌규정상 벌금 상한액: 7,000만원(현행법 제38조제2항)

34) - 고의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의 양벌규정상 벌금 상한액: 1억원(현행법 제38조제1항)
- 과실로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의 양벌규정상 벌금 상한액: 1억원(현행법 제38조제2항)

35)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지침 제390호)에 따르면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징역 1년 당 벌금 1천만원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이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하도록 하고 있음(출처: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775면.).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양벌규정		현행	개정안
위반법조			
제33조제1항	고의범	5천만원이하 벌금 (제38조제1항)	1억원이하 벌금 (안 제38조제1항)
제33조제2항		1억원이하 벌금 (제38조제1항)	3억원이하 벌금 (안 제38조제1항)
제34조제1항	과실범	7천만원이하 벌금 (제38조제2항)	좌동
제34조제2항		1억원이하 벌금 (제38조제2항)	좌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조례상 부과 가능한 과태료의 상한액 상향

개정안은 조례에 따라 부과가능한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9조(과태료) ① ~ ⑤ (생략) 1. ~ 5의2. (생략) ⑥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u>2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징수한다.	제39조(과태료) ① ~ ⑤ (생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⑥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u>500만원</u> ----- ----- -----.

현행법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³⁶⁾),

3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이를 위반하여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제39조제1항³⁷⁾).

한편, 현행법은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1.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37) 현행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은 2021년 이전에는 200만원이었으나 물가상승, 국민의 안전수요 증대, 유사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2021년 10월에 과태료의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제39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은 여전히 200만원에서 변경되지 않았음.

(참조: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45호) 검토보고, 2020. 9., 10-11면.)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이러한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9조제6항).

개정안은 제39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 대한 위험물 규제의 규범력을 확보려는 취지로 보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현행과 개정안 비교>

요건	현행	개정안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이나,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조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조례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함.	조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함.
<참고>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관할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제5조제1항제1호), ②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제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는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임시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과 임시저장소·임시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상한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제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그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것이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한 것보다 항상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경우에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한 경우와 같이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하여 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7. 부 칙

개정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정하고 위험물시설 점검업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대행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제4항·제5항(제7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6항 제2호·제3호(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7항, 제18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호, 제36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제3호(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시설 점검업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미리 할 수 있다. 제3조(제조소등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정기점검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① 새로 도입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제도와 위험물시설 점검업 제도와 관련된 조문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② 결격사유나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③ 수범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 기간 단축 내용, 실제로 현재 운영중인 제도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내용, 단순한 자구 정리와 관련한 조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의 시행일(부칙 제1조)>

시행일	조문내용	해당 조문(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탱크시험자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	제16조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양벌규정, 과태료	제38조, 제39조제6항
공포한 날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재개 신고 기간 단축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제4항·제5항(제7호는 제외),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호(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같은 조 제7항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제28조
	조문 내용 명확화, 신설 조문을 반영한 자구정리 등	제18조제3항, 제29조제2호, 제36조제8호·제9호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제도, 정기점검 대행제도 및 관련 벌칙 등	그 외의 개정규정 (제16조의2, 제18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 제29조제3호, 제31조제7호의2·제7호의3, 제32조제2호의2, 제35조제3호의2, 제36조제9호의2·제9호의3, 같은 조 제13호, 제39조제1항제6호)

위험물시설 점검업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안 부칙 제2조)은 수범자의 편의를 고려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대행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다만, 시행일과 관련해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한 조문 내용의 시행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위험물시설 점검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는 경우(안 제36조제9호의2를 신설하는 경우), 그 시행일은 위험물시설 점검업 제도가 시행되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둘째, 탱크시험자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는 경우(안 제36조제7호의2를 신설하는 경우), 그 시행일은 해당 제도에 대한 계도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수정의견>

부 칙(개정안)	부칙(수정의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제4항·제5항(제7호는 제외한다), <u>같은 조 제6항제2호·제3호(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범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7항, 제18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호, 제36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제3호(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범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제2항·제4항·제5항(제7호는 제외한다), <u>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³⁸⁾,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호(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범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7항, 제18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호, 제36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5항제7호, 같은 조 제6항제3호(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범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6조제7호의2, 제38조 및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문 의 처

02)6788-5351

38) 자구 수정 부분

참고 1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및 내용

(출처: 소방청)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시설 [대령 제8조제1항]		탱크안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사의 공정	필요한 탱크안전성능검사 [대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4]	
			검사구분	검사내용(검사기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가 있는 위험물시설 ※ 지정수량 이상 의 위험물 탱크가 없는 제 조소와 일반 취급소는 제 외됨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 저장소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공정	기초· 지반 검사	[기초·지반검사] ▶ 액체위험물탱크(지중탱크 및 해상 탱크 외) : 탱크의 기초 및 지반 기준(부령 별표 6Ⅳ 및 Ⅴ)의 적합 성 ▶ 지중탱크 : 지중탱크 지반 기준 (부령 별표 6Ⅻ 제2호라목)의 적 합성 ▶ 해상탱크 : 정치설비 지반 기준 (부령 별표 6Ⅻ 제3호라목)의 적 합성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의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공정	용접부 검사 및 충수· 수압 검사	[용접부검사] ▶ 액체위험물탱크(지중탱크 및 해상 탱크 외) : 탱크의 본체 기준 (부령 별표 6Ⅵ 제2호)의 적합 성 ▶ 지중탱크 : 지중탱크 본체 기준 (부령 별표 6Ⅻ 제2호마목4)라)) 의 적합성 [충수·수압검사] ▶ 모든 탱크 : 탱크 본체의 기준 (부령 별표 6Ⅵ 제1호)의 적합 성

참고 2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제도

(출처: 소방청)

구분	종류 (요약)	대상	점검 또는 검사 주체	법령 근거
제조소등 위험물시설 사용 개시 전	기술검토 (사전 설계심사)	▶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제조소 ▶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일반취급소 ▶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기술원	대령 제6조제2항 제3호
	설치(또는 변경)허가 (설계심사)	▶ 모든 제조소등	시·도지사 (소방서장 위임 ³⁹⁾)	법 제6조제1항
	탱크안전성능검사 (시공 중 검사)	▶ 액체위험물탱크 ┌ 기초·지반검사 : 100만 리터 이상 └ 충수·수압검사 : 모든 탱크 └ 용접부검사 : 100만 리터 이상 ▶ 암반탱크	시·도지사 (소방서장 위임 및 기술원 위탁 ⁴⁰⁾)	법 제8조
	완공검사 (시공 후 검사)	▶ 모든 제조소등	시·도지사 (소방서장 위임 및 기술원 위탁)	법 제9조
제조소등 위험물시설 사용 개시 후	정기점검 (사용 중 점검) ✓ 연 1회 이상	▶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 10배 이상 일반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	제조소등 관계인	법 제18조제1항
	구조안전점검 (사용 중 심화 점검) ✓ 11년 주기	▶ 특정(100만 리터 이상)·준특정(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제조소등 관계인	법 제18조제1항 ↳ 부령 제65조제1항
	중간정기검사 (사용 중 외관 검사) ✓ 4년 주기	▶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기술원 위탁	법 제18조제3항 ↳ 부령 제70조제1항
	정밀정기검사 (사용 중 내·외관 심화 검사) ✓ 11년 주기	▶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기술원 위탁	법 제18조제3항 ↳ 부령 제70조제1항
	출입·검사 (불시 검사)	▶ 모든 제조소등 ※ 現, 소방청에서는 연 2회 ‘위험물안전중앙조사단’ 운영 중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법 제22조

39) 소방서장 권한 위임 근거 및 세부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40) 기술원 업무의 위탁 근거 및 세부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